

의안번호	제424호
의결연월일	2017. 11. 1

-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0. 26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10. 26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11. 1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총무과장 : 인 영 환]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군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. 12. 31일로 만료함에 따라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예산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.
-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은 2018.1.1~2019.12.31까지 2년으로 함.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복 준 수)

- 이 동의안은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번지에 위치한 예산군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